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31,499,447원 및 이에 대한 2024.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5. 31.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파주시 소재 이 사건 주유소를 2022. 5.

31.부터 2년간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중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권리금은 2,000만 원이었다.

나. 원고는 2022. 5. 19. 피고 C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2022. 5. 31.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는 그 다음날 위 돈 중 1,7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위 권리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아래 다.항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대납하는 취지로 정해진 것으로서, 원고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고 D에게 이를 지급하면 추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21. 12.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위

위반사항은 사업정지 사안으로 대표자의 원할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피고 D는 2022. 6. 21.경 과징금이 아닌 사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파주시는 2022. 6. 27.부터 2022. 7. 26.까지의 사업정지와 과태료 50만 원(피고 D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과된 것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1. 위 주유소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22. 6. 15.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결국 원고는 2022. 9. 1.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7, 9,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으로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E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거나, 원고도 자신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소장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기는 하나, 중개인으로서 원고와 약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의사라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고(원고는 이러한 의사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가 부당이득반환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E에게의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8호증(녹취록)에 반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대한 청구

청구의 요지 : 피고 D의 약속 위반으로 인하여 2022. 6. 15.부터 2022. 8. 31.까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